

# 플랫폼 자율규제 민생 성과 확산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자율규제 목적·근거, 정부 지원 시책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규정 -
- 자율규제 확산을 통한 민생문제 신속·적극 대응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여 민생 문제에 신속·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생태계의 민생문제와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은 저해하지 않도록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운영(‘22.8월~)을 지원하여,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간 그간 불분명하였던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기쇼핑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이용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규제 성과들이 도출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초기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활동과 정부의 관련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 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위해 자율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자율규제

활동에 있어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가 민간의 자율규제활동을 지원하고, ▲자율협약의 제·개정,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만사항들과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하게 시정해나가고 자율규제 준수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자율규제의 지원과 함께 민생문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규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등,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체계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은 “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여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은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플랫폼 일상화로 민생의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이용자·이용사업자간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며,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자	과 장	천지현 (02-2110-1510)
	이용자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강준성 (02-2110-15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	책임자	팀 장	심주섭 (044-202-6630)
		담당자	사무관	김준협 (044-202-66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마재욱 (044-202-6620)
		담당자	사무관	이호웅 (044-202-6633)

## □ 추진 배경 및 경과

- 플랫폼 자율규제의 확산을 위해 민간의 자율규제활동과 자율기구의 설치·운영, 정부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여 민생문제에 신속·적극 대응하고자 함

※ 개정안 마련('23.8월) → 입법예고('23.9.21~'23.10.31)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23.9.25.~'23.10.6.) → 법제처심사('23.10~11월)

## □ 주요 내용

- (대상/목적)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활동 수행 가능
- (자율기구)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효율적인 자율규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율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지원시책) 정부가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 ▲자율협약의 제·개정, ▲이용자 불만 처리,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의 공개 등
- (확산사업) 정부가 자율규제 확산을 위해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교육·세미나 등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외부의견 청취)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공개 등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활동지원)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 가능
- (처분 시 고려) 정부(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성과를 고려하여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